

SW사업자 신고제도 실태조사를 통한 신고제도 절차 및 활용 개선방안의 도출

임규건, 김중한, 김현수, 김병일, 양경식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경기대학교 경영학부,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인하대학교 법학과,
안양대학교 정보통계학과

Derive an Improvement Scheme through surveying the Software Company Report System in Korea

Gyoogun Lim, Joonghan Kim, Hyunsoo Kim, Byungil Kim, Kyungsik Yang

E-mail : gglim@sejong.ac.kr, jhkim@kyonggi.ac.kr, hskim@kookmin.ac.kr, paulkim@inha.ac.kr,
jsyang@korea.com

요약

현행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는 그 효과성과 활용성에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의 실태를 수주자와 발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그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발주자의 개선의견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단기적 개선안으로 신고제도 절차 및 활용 개선안을 제시한다.

1. 서 론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우량 소프트웨어 및 SI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를 강화하거나, 또는 등록제로 변경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는 정부·공공기관 및 기업 등 소프트웨어 수요자에게 소프트웨어 사업자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을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그리고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현재 SW사업자 신고제도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1996년부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주관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의 경우 약 6,334개 업체가 SW사업자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5년 9월 현재 약 5,757개 업체가 SW사업자 신고 등록을 완료하여, 등록된 실적은 약 61,733건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신고제도는 발주기관이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선택하기 위해 입찰업체를 평가할 때 큰도움이 못되어 효과성에 문제가 있으며 신고 기업들이 신뢰할만한 데이터로 정확히 신고하도록 하는 성실신고 유인대책이 미비하다. 또한 현행 신고제도는 양적인 실적데이터 이외에 질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여 건전한 적격 기업과 부적격 업체를 분별하지 못하므로 신고자료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안 도출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절에서는 수주자와 발주자에 대한 실태조사 항목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제시하고, 3절에서는 수발주자 응답결과에 대한 통합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 하며 4절에서는 신고제도 절차 및 활용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실태 조사 결과

본 조사를 위해서 도출된 설문 항목은 수주자용과 발주자용으로 구분하여 다음 <표 1>과 같다. 발주자의 경우 사업자 이행실적확인서를 중심으로 설문 조사하였으며, 수주자의 경우 SW사업자 신고제도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표 1> 수/발주자용 설문 구성 항목

발주자용 설문 항목	수주자용 설문항목
■ SW사업자이행실적 확인서 사용 여부	■ 신고하게 된 계기
■ SW사업자이행실적 확인서 사용 않는 이유	■ SW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
▷ 이행 실적 확인 방법	■ SW사업자신고제도 전반적 만족도
■ 이행실적 확인서 전반적 만족도	■ SW사업자신고제도의 문제점
■ 이행실적 확인서 활용의 문제점	▷ 절차: 신고절차, 입력항목
▷ 신뢰성: 사업실적, 기술성평가	▷ 비용: 시간, 금전
▷ 활용성: 수주자, 혜택, 제도	▷ 신뢰성: 사업실적, 기술성평가
■ 이행실적 확인서 개선방안	▷ 활용성: 발주자, 혜택, 웹시스템, 제도
▷ 제도: 제도적 의무화, 등록제 강화	■ SW 사업자신고제도의 개선방안
▷ 신뢰성: 신고항목, 사후평가제, 인력정보, 실사제도, 기술성 평가, 신용평가, 등급제도	▷ 제도: 제도적 의무화, 등록제 강화
▷ 활용성: 웹시스템, 발주자 혜택, 수주자 혜택	▷ 비용: 소요비용
■ SW 사업자신고시 추가 또는 수정 항목	▷ 신뢰성: 신고항목, 사후평가제, 인력정보, 실사제도, 기술성 평가, 신용평가, 등급제도
▷ 그 혜택	▷ 활용성: 웹시스템, 발주자 혜택, 수주자 혜택
■ 웹서비스를 통한 발주관리 프로그램에 제공되기 원하는 서비스	■ SW 사업자신고시 추가 또는 수정 항목
■ 실적확인을 통해 받고 싶은 혜택 및 기타 제안	■ SW 사업자신고 시 받은 혜택
■ 기타제안	■ SW 사업자신고시 추가하고 싶은 혜택
	■ 기타 제안

설문조사는 2005년 하반기 2개월에 걸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협조를 받아 수행되었으며, 조사는 E-mail로 수행하였다. 전체 400부의 설문을 수주자와 발주자에게 각각 200부씩 송부하였으며, 전체 설문의 회수율은 약 26% 정도

로 나타났다. 특히 수주자에 비해 발주자의 설문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적게 회수되어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에 대한 개선에 대해 발주자보다 수주자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관 분석

응답기관의 기관구분을 살펴보면 전체의 약 47.3% 가 컴퓨터관련(SI포함)사업, 패키지 SW가 27.8%, DC사업 13.6%, DB사업 11.6%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컴퓨터관련(SI포함)사업을 선택한 80개 업체 중 약 43.8%인 35개 기업만이 SI사업 하나만을 선택했고, 그 나머지 대부분은 2개 이상을 겸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베이스 사업의 경우 순수 데이터베이스 사업만을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선택되었다. 따라서 선택비중이 높은 컴퓨터관련(SI포함)사업의 경우 보다 업종구분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DB 사업의 경우 컴퓨터관련(SI포함)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에 응답한 기업은 전체 93.3%가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은 6.7%정도를 차지하였다. 이는 국내 소프트웨어 사업구조가 대기업 중심의 구조이나 업체 수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압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사된 결과는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및 개선요청으로 판단할 수 있다.

6개 업체를 제외한 전체 기업이 소프트웨어사업자에 신고되어 있다고 제시하여 설문 응답기업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에 대해 어느정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후속 분석을 수행하였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계기

SW사업자로 신고한 계기는 발주처에서 이행실적 확인서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4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위 SW업체들의 추천 및 웹페이지, 신문 등의 홍보 자료를 보고 등록한 경우가 각각 1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국가기관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약 1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인 의무감 보다는

현실에서의 활용을 위해서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신고제도가 있는지 몰랐다는 응답과 신고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및 재정의 지출이 너무 많이 요구된다는 응답이 각각 2건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혜택이 적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도 1건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만족도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에 대한 응답기업의 만족도는 불만족이 9.9%(8건), 보통 61.7%(50건), 만족 27.2%(22건), 매우만족 1%(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보통이상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1건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음을 나타낸다.

현행 신고제도의 문제점

다음 <표 2>은 현행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각 항목별 평균값 및 표준 편차값을 보여준 것이다. 응답기업들이 현행 신고제도의 문제점으로 고려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신고에 따른 혜택이 적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이행실적 확인서를 요구하는 발주자의 수요가 적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에 따른 비용, 데이터의 정확성, 기술성평가에 대한 신뢰성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문제점이 적게 나타났다.

SW사업자 신고 추가 및 삭제 항목

현 신고 항목은 총 30여개로 <표 3>와 같이 SW사업자 신고서는 전체 10여개 항목으로, 수행실적에 대한 소프트웨어사업대장은 5가지 영역으로, 첨부서류로는 10여개가 있다.

이 항목들을 토대로 수발급자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표 4>와 같은 순서로 삭제요청 항목이 도출되었다. 세금계산서가 삭제 요청이 가장 많은 항목으로서 13업체로부터 삭제요청을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 수급형태, 계약서, 기술인력참여현황, 납품실적증명원, 하도급현황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낙찰

방법,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지역 등의 요청항목이 있었다. 주로 수주자들이 신고를 위해 번거롭게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현행 신고제도의 문제점

	N		평균	표준 편차
	유효	결측		
사업자 신고 절차가 복잡하다.	96	1	3.1875	.94382
사업자 신고 항목이 불필요하게 많다.	96	1	3.1563	1.02934
신고에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96	1	3.1458	1.03598
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다.	95	2	2.3684	.96814
입력된 사업실적 데이터가 부정확하다.	96	1	2.5625	.91551
기술성평가 항목이 미흡하여 신뢰성 평가에 문제가 된다.	95	2	2.9579	.74256
프로젝트 발주 시 SW사업 이행실적 확인서를 요구하는 발주자의 수요가 적다.	96	1	3.3958	1.04104
SW사업자 신고에 따른 혜택이 적다.	96	1	3.6771	.97866
신고 시 이용하는 웹시스템은 이용하기 불편하다.	95	2	2.8316	.93003
사업자 신고제도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내용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96	1	3.1979	.86596

<표 3> 현행 SW사업자 신고 항목

현행 SW사업자 신고 항목	
SW사업자 신고서	신고기간, 신고분야, 회사 기본정보(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설립일, 소재지, 기업형태 등), 종업원수(상시 및 SW사업관련 총인원), 재무현황, 신고분야별 SW매출 및 수출액, 담당자
SW사업대장	프로젝트 및 제품(솔루션)명, 산업분야, 사업분야, 발주자명, 프로젝트구분(공공, 민간), 지역, 수급형태, 낙찰방법, 공동수급자 현황, 원수급자 현황, 계약 및 매출액, 기술인력참여현황, 하도급 현황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소프트웨어 사업대장, 수출계약서 사본,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납품실적증명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

추가 요청항목은 인증서 사본, 기술 협력 계약서 사본, 인증마크, 특허권, 시상내역 등 주로 기업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인증시켜 줄 수 있는 항목이었다. 이밖에는 신용도, 신고분야별 매출액, 통신장비관련 시공분야실적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전문화 된 기

업에게 유리한 항목들로서 신고기업간의 차별화에 대한 니즈를 나타내고 있다.

<표 4> 삭제요청 설문조사 결과

삭제요청항목	요청업체수	삭제요청항목	요청업체수
세금계산서		지역	4
수급형태		법인등기부등본	4
계약서		재무제표	3
기술인력참여현황	9	재무현황	3
납품실적증명원	5	공동수급자 현황	2
하도급현황		원수급자 현황	2
낙찰방법	5	사업분야	2
중소기업기준검토표	4	사업자등록증	2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시 받은 혜택

한편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를 통해 혜택을 본 사항은 다음 <표 5>에 제시된 것과 같이 정부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시 입찰 참여자 요건 부여가 전체의 약 2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의 법적자격 인정이 24.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참여 하한금액 인정,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항목 적용 및 가점 부여, 정보통신부의 지원 및 혜택 등은 낮게 나타나 혜택으로의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시 받은 혜택

사업자 신고시 혜택	갯수	응답 비율	사례 비율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의 법적 자격인정	54	24.8	65.1
정부 공공기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입찰 참여자격 요건	64	29.4	77.1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4호)에 의해 평가항목 적용 및 가점 부여	18	8.3	21.7
신고된 실적에 대한 소프트웨어사업 이행실적 확인서 발급(고시 제8조)	23	10.6	27.7
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도(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11호)에 근거한 사업참여하한금액 인정	10	4.6	12.0
정보통신부 지원 각종 제도 및 사업에 대한 혜택 부여	20	9.2	24.1
소프트웨어사업 발주기관의 업체추천 의뢰 시 추천의 기초자료로 활용	29	13.3	34.9
전체 응답	218	100.0	262.7

3. 개선안 도출

개선안 도출을 위해 설문대상자를 수주자, 발주자로 나누어 설문항목 중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제도, 비용, 신뢰성, 활용성 측면으로 12개 항목을 선정하여 각 항목의 평균 점수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시급 도입, 대책필요, 긍정적 고려, 향후 고려, 부정적 고려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발주자를 통합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산술평균과 신고주체가 수주자 이므로 수주자 가중치를 발주자의 2배로 설정하여 보정평균을 내어 좀 더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우선순위에 따라 정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수발주자 통합 개선안 분석

우선순위	발주자	수주자	산술평균	보정평균
신고양식항목미단순화	338			
수주자에게 돌아가는 혜택	267		324	
신고제도활용강화		320		
SW사업자인등급		292	328	317
기술성평가항목을 강화		289	328	315
등록제도강화		286	326	313
발주자에게 돌아가는 혜택	267	33	299	310
사업프로젝트평가		279	323	308
국제화제를 통한 통합 발주관련서비스	339	292	312	305
신용평가항목	335	282	308	299
설사제도	267			
전체참여인력에 대한 정보	300		252	

수주자·발주자의 의견을 종합 분석해보면 가장 시급한 항목으로 신고양식 항목의 단순화, 수주자에게 돌아가는 혜택, 신고제도의 활용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신고 항목의 단순화, 신고제도의 활용강화 등은 수주자와 발주자 양 측 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주자에게 돌아가는 혜택 부분의 경우 발주자가 느끼는 필요성은 적은 반면 수주자 측은 가장 시급히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SW사업자의 등급, 기술성평가 항목강화, 등록제도 강화, 발주자에게 돌아가는 혜택 등이 있는데 이는 수주업자 선정 시 정확한 평가를 위한 것으로 발주자측면의 필요성이 강하다. 하지만 수주

자 또한 긍정적인 고려 또는 향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없이 진행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책이 필요한 사항들이다.

그 이외에 사후 프로젝트 평가, 홈페이지를 통한 통합 발주관리 서비스, 신용평가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크게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고려할 사항들로서 장기적으로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

한편, 실사제도와 전체 참여 인력에 대한 정보는 불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발주자의 경우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위와 같은 추가 정보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수주자의 경우 준비를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회사 내부 정보를 드러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개선안을 토대로 긴급성과 투자비용 등을 고려해 다음 <표 7>과 같은 단기 및 근본적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표 7> 개선안 도출

단기적 개선안 (신고제도 절차 및 활용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절차 개선· 수주자 혜택의 추가· 신고제도의 활용 강화
근본적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제도 도입· 사업자 능력평가 제도 도입· 사업자정보의 집중관리 시스템 구축

단기적 개선안(신고제도 절차 및 활용 개선안)은 즉시 시행 가능한 것 또는 중장기 개선안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시급한 항목을 위주로 설정한 것이다. 신고절차의 개선, 수주자 혜택 추가, 신고제도의 활용 강화 추진 등이다. 즉시 시행 가능한 항목들을 먼저 시행함으로서 단기간에 실효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고제도의 활용을 강화하여 등록제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근본적 개선안은 단기적 개선안 시행 후 필요성이 부각되는 근본적인 개선안으로서 등록제도 도입, 사업자 능력평가 제도 도입, 사업자정보의 집중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도출되었다. 신고제도 의무화 추진 이후에 시행이 가능한 구체적인 항목들로 이를

통해 체계적인 제도화 및 SW 산업의 발전과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 할 수 있다.

4. 신고제도 절차 및 활용 개선안

신고제도 절차 및 활용 개선안은 즉시 시행 가능한 것 또는 근본적 개선안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시급한 항목을 위주로 설정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신고항목의 삭제, 보완, 추가 등 신고항목의 단순화를 통해 신고절차를 개선하고, 가점 제도를 통한 수주자 혜택을 추가하며, 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신고제도의 활용 강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4.1 신고절차 개선

4.1.1 신고 항목의 개선

현 신고프로세스는 크게 온라인을 통한 선행접수와 오프라인 증명서를 통한 확인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신고 항목은 총 30여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불필요한 신고 항목 제거, 필요한 신고 항목 추가 등을 통해 신고항목을 개선할 수 있다.

<표 5>의 결과를 토대로 SW신고를 주관하고 있는 SW산업협회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삭제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서 항목별 필요성에 따라 '절대필요,/필요,/삭제가능'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삭제가능 항목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이다. 이 두 항목은 대법원 (<http://www.rios.go.kr>), 국세청 (<http://www.nts.go.kr>)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온라인을 통해 인증하도록 하여 관련 프로세스를 단순화 시킬 수 있다. 현재 삭제는 불가능하지만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개선 가능한 필요항목은 하도급과 관련된 수급형태, 낙찰방법, 하도급현황, 공동수급자 현황, 원수급자 현황과 기술인력 참여현황, 지역 등이다. 이 항목들은 향후 관련 정책이 변하거나 대체 할 DB가 구축되거나 활용에 대한 협약이 이루어진다면 개선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SW신고에 기초자료로서 SW산업협회 입장에서 정확한 실적 확인 및 SW산업 현황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항목으로 필요 항목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납품실

적증명원, 재무제표, 재무현황, 중소기업 기준 검토 표, 사업분야 등이 있다.

SW산업협회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추가요청 항목들의 추가가능여부도 확인하였다. 인증서 사본, 특허권 등 2절의 추가요청 항목들은 현재 특성화된 일부 기업에게만 이점을 줄 수 있으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업체의 등급을 매기고 있지 않으므로 현 상황에서는 추가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는 도입 불가능 하지만 업체들 중에 업체간의 우수성을 입증하기를 원하는 니즈가 있으므로, 향후 가점제도 등을 시행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4.1.2 신고 절차의 개선

신고 절차의 개선은 크게 입력항목의 온라인화, 입력시의 기본 정보의 재활용, SW사업 관리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가능하며 이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절차개선을 도출할 수 있다.

□ 온라인화 추진

온라인상으로 인증 가능한 것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온라인처리를 하여 중복된 프로세스를 최소화한다.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은 현재 온라인화 가능한 서류이다. 향후 가점제도 등을 도입한 이후 온라인 확인이 가능한 특허권, 신용도평가와 같은 인증서는 발급기관과 협의하여 온라인 인증을 통해 확인하여 프로세스를 단축시킬 수 있다.

□ 회사 기본정보의 재활용

현재는 매년 회사 정보를 기입할 때마다 회사 기본 정보를 새로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회사 기본정보의 변경이 없다면 기존 정보 그대로 사용하고 변경사항만 수정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신고를 위해 입력하는 시간이 단축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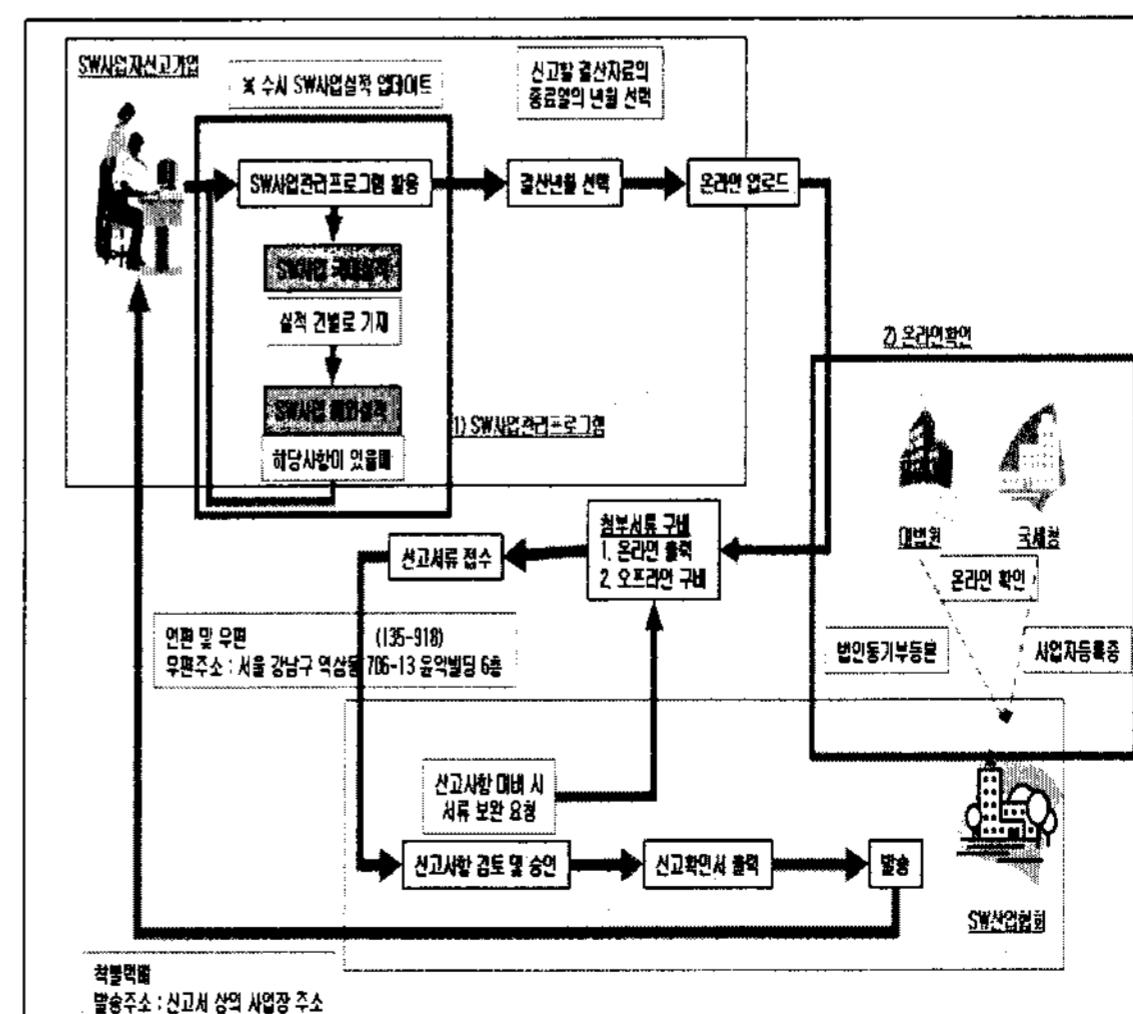
□ SW사업 관리 프로그램 도입

현재 SW사업자등록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사업영역 및 신고분야, 회사

명, 설립연월, 본사소재지, 기업형태, 상시종업원수, SW사업 관련 총인원, 재무현황, 신고분야별 SW매출 및 수출액 등 여러 가지 항목을 일일이 웹브라우저에 입력해야 한다. 이것을 신고기간마다 반복하는 것은 담당자에게 큰 부담이다. 이에 기업용 SW사업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방안을 제시해본다. SW사업관리 프로그램은 평소에 담당자가 사업대장을 관리하여 수시로 변경,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 신고 기간에 쉽게 업로드, 등록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를 통해 매번 부담이 되는 사업자등록을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절차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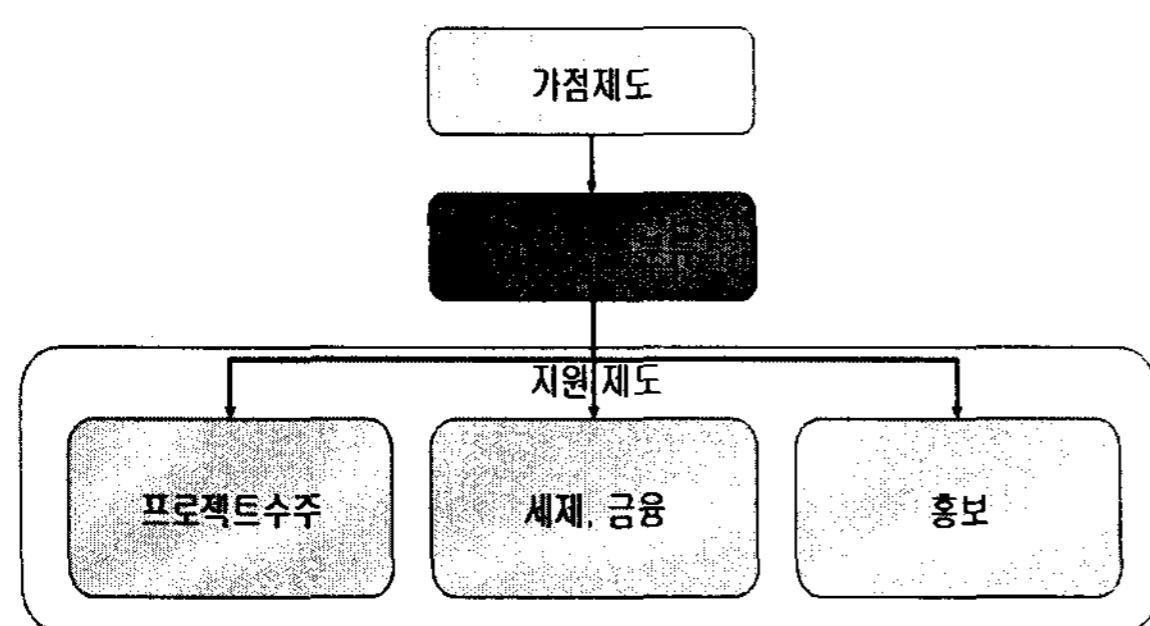
현행 SW사업자신고 절차는 크게 온라인을 통한 사업자신고서 작성과 오프라인을 통한 신고서류 인증 두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두 단계는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그림 1>은 개선 후 SW사업자신고절차 예상도이다. 변경된 부분은 첫째 SW사업자관리프로그램을 통한 신고절차 축소이다. 수시로 사업실적을 업데이트 한 후 등록시기가 되면 온라인으로 업로드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법원, 국세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의 관련서류를 온라인 인증하는 것이다. 개선된 프로세스를 통하여 현행 프로세스에 비해 수일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1> 개선 후 예상 SW사업신고절차

4.2 수주자 혜택 추가

수주자 혜택 추가는 수발주자 설문결과 시급히 도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혜택은 크게 프로젝트 수주시 혜택, 세제 및 금융지원, 홍보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SW전문인력을 위한 경력증명서 발급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우선 혜택을 받을만한 지에 대한 평가와 업체별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의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가점제도를 통해 우수기업을 선별하고 우수기업에게 프로젝트 수주시 혜택, 금융지원, 세제혜택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2> 수주자 혜택의 추가

4.2.1 가점제도

현재 신고제 방식은 입찰 시에만 자격제한으로서 활용되고 있고 해당 기업의 성실한 신고 및 SW 사업 수행 활동 및 능력 평가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없다. 가점제도를 이용하여 우수 SW 업체를 중심으로 차별적인 지원정책을 수행한다면 성실한 신고와 신고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SW산업을 육성하려면 기술력 등 가능성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가점제도는 성실 신고자를 선정하여 가점을 주는 성실 신고자 가점, 매출액과 기술성 등 SW 산업발전의 기여도에 따른 가점, 발주자의 사후평가에 따른 가점을 등 이용하여 선별 시행 할 수 있다. 성실신고자, 매출액 등의 가점은 바로 시행이 가능하고 기술성, 사후평가는 향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등급에 따라 지원제도를 통해 혜택을 차별적으로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4.2.2 지원제도

앞서 설명한 가점제도에 따라 각종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크게 프로젝트 수주, 세금·금융 혜택, 홍보지원, 경력증명서 발급 등의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 프로젝트 수주시 혜택

프로젝트 입찰시 SW사업신고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사업자로서 법적 자격 또는 프로젝트 입찰 참여 자격 등으로 수주시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발주자에 대해서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기업 평가를 온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위에 설명한 가점제도를 통해 기업선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이루어진다면 공공기관 프로젝트 수주시 가점 등을 부여하여 우수기업들의 선별 및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 세제/금융지원 혜택

우수 기업들에게는 SW 산업에 기여한 만큼 세제 및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중소 SW 벤처기업의 경우도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동원력이 약해 경쟁에서 기존 기업에게 밀리는 등의 진입장벽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우수한 기업을 선별, 지원하여 건강한 산업을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 금융지원 혜택으로 정책정부자금 또는 금융기관 대출 시 지원자격 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병역특례업체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기술신용평가 기업대출자금 선정시 가점부여,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선급금지급보증 등의 보증업무에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이 있고 성실 신고자에 대해 인지세, 등록세,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다양한 세제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 홍보 지원

중소기업업체에서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기업홍보이다. 기업체 및 정부기관에 업체에 대한 홍보, 관련 홈페이지에 기업 소개 정보 제공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한 기업 홍보는 SW 협회나 신고제 공식 홈페이지 내 또는 특정 도메인을 통해

홍보 카테고리를 생성한 후 제공 솔루션 및 다양한 기업정보를 게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검색 기능을 추가하여 기업의 자료를 체계화 한 뒤 제공 솔루션, 회사명, 관련분야 등 다차원 검색을 지원하고 일종의 e-마켓플레이스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개인 정보 입력을 통한 경력증명서 발급

현재 기술인력 참여현황에서는 프로젝트 참여직무의 PM급 1인 이상 을 기재하게 되어있다. 현재 일반 SW 전문인력들의 경력증명서는 각각의 관련회사를 방문하여 준비해야 한다. 입력된 기술인력에 대해서나 또는 개인적으로 입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원하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경력사항을 입력할 수 있게 해주면 발주자는 정확한 인적정보 확인이 가능해지고 수주회사 또는 개인별로는 경력증명서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

4.3 신고제도의 활용 강화 추진

소프트웨어 사업자신고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주자 및 수주자 모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지만, 보다 많은 모든 관련 발주자의 참여와 수주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구체적 개선방안은 공공부문의 시스템통합사업을 관리하는 정보화지원사업 관리요령과 공공부문 SW사업 발주·관리 표준프로세스 지침에 반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공공부분의 정보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주기관 또는 주관기관은 일정규모의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업자신고를 행한 자 중에서 시스템공급자를 선정하도록 동관리요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부문 SW사업 발주·관리 표준프로세스 지침은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한 특성화된 발주·관리 표준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보화사업의 성공률 제고를 도모하고 있는 지침으로, 국가 정보화 차원에서 수행되는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발주프로

세스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자임을 확인하는 작업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결론

현행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는 그 효과성과 활용성에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의 실태를 수주자와 발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그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발주자의 개선의견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즉시 시행 가능한 것 또는 중장기 개선안의 기초가 되는 단기적 개선안으로 신고절차의 개선, 수주자 혜택 추가, 신고제도의 활용 강화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즉시 시행 가능한 항목들을 먼저 시행함으로서 단기간에 실효성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신고제도의 활용을 강화하여 등록제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근본적으로는 등록제도의 도입, 사업자 능력평가 제도 도입, 사업자정보의 집중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며 이를 통해서 체계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관리의 제도화 및 SW 산업의 발전과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계경문, “SI 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연구,” 한국SI학회지 제2권 2호, 11, 2003, pp31-37
- [2] 일본경제산업성(<http://www.meti.go.jp/policy>), “SI 등록제도,” 1988.
- [3] 정보통신부, “SI산업 활성화 방안,” 장관간담회 안건, 2004
- [4] 중국 정보산업부 (<http://www.ceecm.gov.cn/sio/policy/0/0006.htm>), “컴퓨터정보시스템통합 자격인정제도,” 2000
- [5] 한국SI연구조합, “2005년도 IT서비스 산업 시장·산업 환경전망,” SI연구조합 조사연구자료, 2005
- [6]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자 신고 항목,”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내부자료, 2003
- [7]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03년도 SW산업 연차보고서,” <http://dw.sw.or.kr>, 2004
- [8] Gartner Dataquest Guide, “Software Market Research Methodology and Definitions, 2003-2004,” Gartner, 2004